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4. 30. 성일종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 5.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25.7.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성일종의원)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성일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